

보도시점 2024. 3. 5.(화) 조간
2024. 3. 4.(월) 12:00

배포 2024. 3. 4.(월) 08:00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강화를 위한 첫 지원 사업 -
- 지역 마약 중독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9개 거점 치료보호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 ‘권역 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 단,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 자부담 필요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환경개선금·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권역기관’ 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계획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김민욱 (044-202-3871)

붙임 1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 계획

□ 추진배경

-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활발, 마약밀수 급증*, 거부감 적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중독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투약사범 매년 증가추세

* 밀수사범: ('17) 481명 → ('23) 1,235명, 2.6배 증가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류 투약사범	6,177	8,210	9,044	8,522	8,489	10,899

- '23년 기준, 치료보호제도 이용자는 마약류 중독질환 진료 인원의 22.7%, 투약 사범의 약 4%에 불과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류 중독질환 진료	2,201	2,428	2,631	2,807	2,829	2,818 (추정치)
치료보호 실적	267	260	143	280	421	641
자의신청	262	242	134	279	407	627
검찰의뢰	5	18	9	1	14	14

* '22년 기준, 치료자 수는 총 454명(치료보호 421명, 치료명령 15명, 치료감호 18명)으로 사범 단계별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 활성화 필요

-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환자 관리, 치료 난이도는 높으나 치료보호비 지급 외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 신규 신청 및 기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실적 저조
- 이에, 실질적인 치료보호기관의 확대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자 입원·외래 치료가 가능한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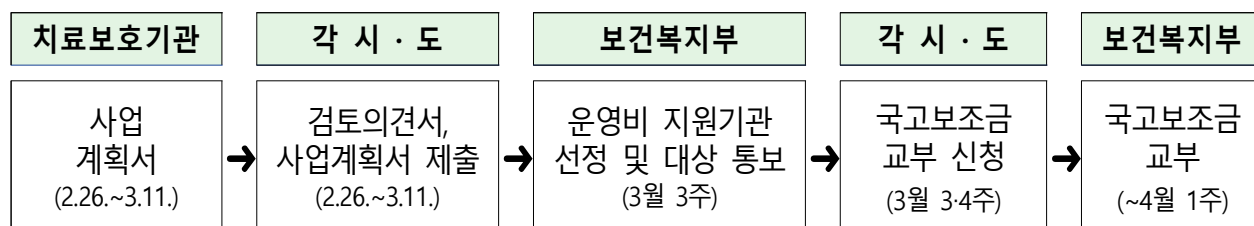
- (법적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권역별 치료 보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기관의 역할 강화를 도모
- (신청대상)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
- (선정내용) ①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 · ② 환경개선금 지원 대상기관 및 ③ '23년 치료보호기관 평가를 통해 성과지원금 지급 대상 기관 선정
 -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 (주요기능)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
- (지원내용) 기본 운영비, 환경개선비, 성과보상금 지원 (※ 국비 100%)

□ 추진계획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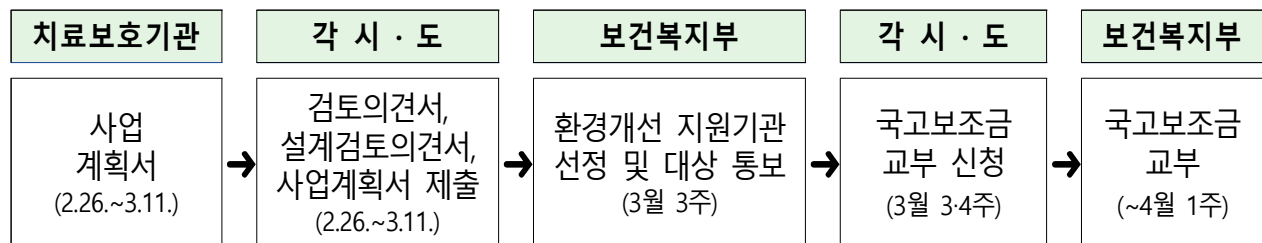
- (신청 및 접수) '24.2.26.~3.11. (※ 선정 및 통보 '24. 3월 3주 예정)
- (신청자격)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
 - * '23년 기준, 치료보호 실적이 있는 기관은 10개소
 - (교부조건) 치료보호 입원·외래 치료 연 30명 이상 권고(입원 치료 필수), 이용자(입원환자) 만족도 조사 실시, 제출한 계획 수행
- (절차) 치료보호기관 ⇄ 시·도 ⇄ 보건복지부(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선정방법) 마약류 중독환자 진료 실적 및 의료진 확보 등 진료역량과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치료실적,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의료질 개선 노력 등
- (지원내용) 기관별 1억 원(총 9억 원)
- (유지기간) 선정기준 등을 근거하여 매년 평가, 1년 단위 지정·갱신

[환경개선금 대상기관 선정]

- (신청 및 접수) '24.2.26.~3.11. (※ 선정 및 통보 '24. 3월 3주 예정)
- (신청자격) 권역 치료보호기관 중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
- (지원기준)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자부담 포함하여 사업 수행
- (지원내용)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있는 시설 신축비, 증·개축 및 개·보수비, 장비 구매비
- (선정방법)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중앙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여 심의 선정
- (절차) 치료보호기관 ⇄ 시·도 ⇄ 보건복지부(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23년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

- (일정) '24. 3월 3주 예정 (※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평가 시 운영)
- (대상) '23년 치료보호 실적과 질 관리가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 '25년부터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기준) 전년도 운영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중앙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내용) 평가결과 A등급 1개소(2억 원), B등급 1개소(1억 원)
- (절차) 보건복지부(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선정 결과 통보
↔ 우수 치료보호기관, 서류 및 성과금 지급 결과 보고 제출

□ 향후일정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3월 3주)
 - 9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선정
 - 환경개선금 대상기관 선정
 - 우수 치료보호기관 평가
- 시·도, 국고 보조금 신청(3월 3·4주)
- 국고 보조금 시·도 교부(~4월 1주)

붙임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24. 2월 기준)

지역	구분	병원명	지정병상 수 (개)	대표번호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5	02-300-8114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507-3000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310-7710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동구	대동병원	25	053-663-1008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50	032-571-9111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0
대전	중구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서구	마인드병원	2	042-528-6550
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270-7000
경기	부천시	더블유진병원	1	032-321-1433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	031-269-5665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2	031-330-6200
	의왕시	계요병원	10	031-455-3333
	이천시	이천소망병원	5	031-637-7400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2	043-279-0114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850-5700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545-8700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240-2100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90	055-536-6440
	양산시	양산병원	2	055-379-0202
제주	제주시	연강병원	2	064-726-7900
합계		30개 의료기관	331	-